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별도 설립〉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8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별도 설립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30.
3. 회부연월일 : 2025.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첨단산업 분야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교육체계만으로는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인재혁신 업무에 특화된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업무를 수행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첨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등).

Ⅲ. 검토의견

1.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별도 설립

개정안은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설치된 인재혁신센터를 별도로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설치하고 종전과 같이 관련 출연금 지원, 공무원의제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 첨단 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u><신 설></u> <u><신 설></u>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u><신 설></u>	제14조(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의 설립)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 1. ~ 6. (현행과 같음) ⑤ 진흥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현행	개정안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6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u>인재혁신센터</u> 또는 <u>해외인재유치센터</u>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의 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진흥원이 아닌 자는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1. <u>진흥원</u>----- -----

현행	개정안
아닌 사람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제14조제9항을 위반하여 <u>첨단 산업인재혁신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현행법 제14조¹⁾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해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첨단산업아카데미, 인력수급분석 및 통계 작성,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 등 각종 대외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2] 인재혁신센터 설치근거 및 역할

제14조(인재혁신센터의 설치) ①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인재혁신센터”라 한다)를 둔다.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인재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 2025. 1. 17.] [법률 제20033호, 2024. 1. 16., 제정]

1.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첨단산업아카데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 산업계의 인재혁신 활동의 지원
2. 산업계 시설의 개방·공유, 생태계 활성화, 인재데이터의 관리·활용 등 기반조성의 지원
3. 제19조에 따른 인력수급분석, 통계 작성 등 정부의 정책 검토 지원
4.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국내외 인재혁신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6.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사업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데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²⁾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가 넓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기존 인력·조직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업무를 수행하기 보다 별도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전문적·효율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2)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83호[2025-7], 민순홍 부연구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이 별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고 그 외에는 기존 인재혁신센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동일한 업무를 고유사업으로 수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고 현행 인재혁신센터 직원의 경우와 같이 형벌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됨.

그리고 ‘인재혁신센터’가 아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해서만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³⁾되고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라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됨.

이에 따라 첨단산업 인재양성사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중 하나로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의 독자적인 고유사업으로 수행되고 별도 정관·이사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적인 조직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출연금 이월관리 등에 있어 해당 사업 계정이 별도로 분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다만,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재수요가 산업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재양성 정책과 산업정책 역시 불가분의 관계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인재양성 지원 뿐만 아니라 R&D, 지역기업 양성 및 지역인재 육성, 중견기업 지원 정책 등을 지원 중이므로 정책 시너지 제고 측면에서 현행과 같이 예산지원 확충 등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내에서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6